

최신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로열티는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매출발생종료일 등의 시점에 익금인식함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 (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사전법규법인-1204, 2023.03.16

질의

- (질의1)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수령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의 귀속시기
(갑설) 매출액 산정기간('22.1.1~'22.11.27.)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로열티 지급법인의 감사보고서 확정일('23년 중)이 속하는 사업연도
- (질의2) 질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7년)
(을설) 특허권 잔여존속기간(3년)

회신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국법인이 판매한 특정 제품의 매출액 중 사전약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2022.1.1~2022.11.27.)의 종료일"에 확정되는 경우에

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권리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내용연수는 해당 특허권의 잔존 존속기간(3년)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7년)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인-5580, 2023.08.03

질의

-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691, 2023.03.15

질의

- (질의1) 상속개시 후 공동대표자로 취임한 가업상속인 2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인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 해당 가업상속인 2명을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2) 해당 가업상속인 2명이 '기준고용인원'에 포함된다면,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계산 시에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하 "가업기업"이라 함)의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고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경우, 해당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이하 "산정기간"이라 함)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공동상속인의 총급여액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기간의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단,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함)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7항에 따라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인이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1388, 2023.08.21

질의

- 13.2.15. 前 체결된 저축성 보험계약의 약관 변경을 통해 만기 전 해약시 가입자에게 당초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 보험가입자가 이러한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당초 약관에 따른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 보험의 약관 변경을 통해 만기 전 해지 시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이하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관 변경을 통해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